

액화석유기스자동차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Cylinder Valves for LPG vehicles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의결: 2023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슝인 : 2024년 3월 13일

가 스 기 술 기 준 위 원 회

위 원 장 신 동 일 : 명지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이 용 권 : ㈜대연 부사장

당 연 직 황 윤 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곽 채 식 :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고압가스분야 김 윤 제 : 성균관대학교 교수

윤 춘 석 : ㈜한울이앤알 대표이사 이 기 백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 범 석 : 경희대학교 교수

액화석유가스분야 박 달 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손 승 길 : ㈜경동나비엔 상무 유 은 철 : SK가스㈜ 부사장 이 용 권 : ㈜대연 부사장 조 규 선 : 호서대학교 부교수

도시가스분야 공 병 근 : JB주식회사 본부장

신 동 일 : 명지대학교 교수 안 영 훈 : ㈜한양 부사장

윤 익 근 :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 책임 이 창 원 : 벽산엔지니어링㈜ 부사장

수소분야 강 경 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

백 운 봉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

정 호 영 : 전남대학교 교수 최 병 학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KGS Code 제·개정 이력			
종목코드번호	KGS AA320 ²⁰²⁴		
코 드 명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 검사 기준		

- 기 - 기 - 7 - 1 - 기	, ii O
제·개정 일자	내 용
2009. 9. 25.	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57호)
2010. 1. 6.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80호)
2012. 6. 26.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13호)
2012. 12. 28.	개 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549호)
2017. 9. 29.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75호)
2024. 3. 13.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11호)
	- 이 하 여 백 -

<u>목 차</u>

1. 일반사항1
1.1 적용 범위1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1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내용 없음)1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1
1.4 용어 정의(내용 없음)2
1.5 기준의 준용2
1.6 경과조치 (내용 없음)2
2. 제조시설기준2
2.1 제조설비
2.2 검사설비
3. 제조기술기준3
4. 검사기준(내용 없음)
5. 재검사기준(해당 없음)
6. 그 밖의 제조 및 검사기준 (내용 없음)3
부록 A 고양가스 용기백비 제조업소의 품직시스템 우영에 대하 익반기준 (내용 없음) ··4

액화석유기스지둥차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 · 기술 · 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Manufacture of Cylinder Valves for LPG Vehicles)

1. 일반시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에 부착되는 부속품 중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용 밸브 및 안전장치(이하 "용기밸브"라 한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에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 의결(안건번호 제2023-10호, 2023년 12월 15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11호, 2024년 3월 13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0의2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디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내용 없음) <개정 12. 6. 26.>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개정 12. 12. 28.>

1.3.2.1 규칙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 이란 표 1.3.1.2에 따른 외국 용기의 인정기준을 말한다.

표 1.3.2.1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인정기준	공인검사기관
CGA	_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 pe)	E 마킹 검사기관(notified body)
고압가스보안법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 · 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1.3.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표 1.3.1.2의 인정기준으로 제조하고 해당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1.4 용어 정의(내용 없음) <개정 12. 6. 26.>

1.5 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기부속품의 모양·차수 등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17. 9. 29.>

1.6 경과조치 (내용 없음) <개정 12. 6. 26.>

2. 제조시설기준

2.1 제조설비

용기밸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이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제조하는 용기밸브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 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1) 단조설비
- (2) 표면처리설비 및 초음파세척설비
- (3) 구멍가공기 · 외경절삭기 · 내경절삭기 · 나사전용가공기 · 바니싱가공기 등 공작기계설비
- (4) 조립설비
- (5) 그 밖에 용기밸브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2.2 검사설비

용기밸브를 제조하려는 자가 이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밸브를 검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제조하는 용기밸브에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는 다음과 같다.

- (1) 내압시험설비
- (2) 기밀시험설비
- (3) 나사게이지 · 버니어캘리퍼스 등 두께측정기

- (4) 안전장치성능시험기
- (5) 과류방지밸브(EFV) 성능시험기
- (6) 과충전방지장치 성능시험기
- (7) 액면표시장치 성능시험기
- (8) 표준압력계
- (9) 그 밖에 용기밸브 검사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
- 3. 제조기술기준 <개정 12. 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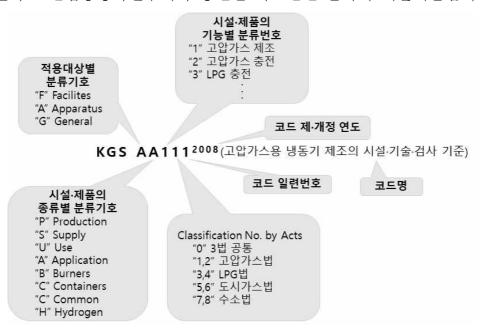
제조기술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4. 검사기준(내용 없음) <개정 12. 6. 26.>
- 5. 재검사기준(해당 없음)
- 6. 그 밖의 제조 및 검사기준 (내용 없음) <개정 12. 6. 26.>

부록 A 고입기스 융기밸브 제조업소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내용 없음) <개정 12. 6. 26.>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야 및 기호 종류 및 첫째 자리 번호		호	분야 및 기호		종류 및 첫째 자리 번호		
7 H-(A)		냉 동 장치류	1		제조·충전 (P) (Production)	고압가스 제조시설	1
		배관장치류	2			고압가스 충전시설	2
	717(4)	밸브류	3			LP가스 충전시설	3
		압력조정장치류	4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4
	(Appliances)	호스류	5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5
		경보차단장치류	6	1		도시가스 충전시설	6
		기타 기구류	9		판매 • 공급 (S) (Supply)	고압가스 판매시설	1
	어스기	보일러류	1			LP가스 판매시설	2
	연소기 (B)	히터류	2	시설 (2)		LP가스 집단공급시설	3
	(Burners)	레인지류	3	(F)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4
	(Darriers)	기타 연소기류	9	(L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5
제품		탱크류	1		저장ㆍ사용 (U) (Use)	고압가스 저장시설	1
수소 (H)		실린더류	2			고압가스 사용시설	2
	용기(C)	캔류	3			LP가스 저장시설	3
	(Containers)	복합재료 용기류	4			LP가스 사용시설	4
		기타 용기류	9			도시가스 사용시설	5
		수소추출기류	1			수소 연료 사용시설	6
		수전해장치류	2	일반	공통	기본사항	1
	(Hydrogen)	연료전지	3	(G) (General)	(C) (Common)	공통사항	2

